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개인정보를 이유로 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소속 공무원의
성명·직위·부서·주요업무를 제외〉
■ 윤건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071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윤건영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4. 9. 19.
3. 회부연월일 : 2024. 9.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중앙정부 부처는 물론 지방정부의 행정복지센터에 이르기까지 각 기관 소속 직원의 성명·직위·부서·주요업무를 기관별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소속 직원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타당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생활과 직무공정성 등을 이유로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외 주요 국가 사례를 보면 미국이나 영국, 독일 등은 백악관 및 총리실 소속 직원의 성명·직위 등을 공개하고 있고, 심지어 미국은 소속 직원의 연봉까지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속 직원의 성명·직위·부서·주요업무를 공개하도록 개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고자 합니다(안 제9조제1항제6호마목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개인정보에 해당함을 사유로 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속 공무원의 성명·직위·부서·주요업무’를 제외하여 해당 정보의 공개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제6호마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 ----- -----. -----. 1. ~ 5.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	

현행	개정안
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u><신 설></u>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	6. ----- ----- ----- ----- ----- ----- -----. 가. ~ 라. (현행과 같음) <u>마.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속 공무원의 성명·직위·부서·주요업무</u> 바. (현행 마목과 같음)

현행	개정안
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	7. 8.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는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이하 “비공개 세부 기준”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은 제3항에 따라 수립된 비공개 세부 기준이 제1항 각 호의 비공개 요건에 부합하는지 3년마다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비공개 세부 기준을 개선하여 그 점검 및 개선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함을 원칙¹⁾으로 하되, 제9조제1항 단서와 제1호~제8호는 법령에 따른 비밀·비공개 사항,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 등과 관련되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수 있는 사항,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 등의 비공개 대상 정보를 규정²⁾하고 있음.

-
-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제6호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것으로,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하고 있는데, 제6호에 다시 단서 규정과 각 목(가목~마목)을 두어 법령에 따라 열람할 수 정보(가목), 공표 목적의 정보로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나목), 공익이나 개인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다목),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라목) 등은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동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대통령비서실³⁾ 및 국가안보실⁴⁾ 소속 공무원의 성명·직위·부서·주요업무’를 마목으로 추가하여, 동 정보들의 공개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와 관련해서는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과 관련된 정보공개청구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2022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뉴스타파’ 등은 대통령비서실에 소속 공무원의 성명, 부서, 직급·직위, 담당 업무를 포함한 직원명단의

3) 「정부조직법」 제14조(대통령비서실) ①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을 둔다.

② 대통령비서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4) 「정부조직법」 제15조(국가안보실) ① 국가안보에 관한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가안보실을 둔다.

② 국가안보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공개를 청구하였는데, 대통령비서실은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등 1급 이상 직원들의 명단은 공개하였으나, 그 외 직원들의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에 해당함을 사유로 비공개하였음. 동 청구들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으로 이어졌고, 2023년 10월과 2024년 9월에 비서관급 미만 직원의 성명, 부서, 직급·직위를 공개해야 한다는 1심⁵⁾(원고 일부승소⁶⁾) 및 2심 판결(1심 인용)⁷⁾이 있었음.

동 판결은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이 누구인지는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하고, 이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공익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를 제시⁸⁾하였으며, 개정안은 이와 같은 사항을 입법에 반영하여 국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속 공무원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성명·직위·부서·주요 업무)들을 공개해야 함을 명확히 하려는 타당한 입법취지로 보임.

5) 서울행정법원 2023. 8. 17 선고 2022구합81261 판결

6) 대통령비서실 직원의 소관 세부업무에 대해서는 대통령비서실 직원의 소관 세부업무에 관한 정보 또는 이를 검색편집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서울행정법원 2023. 8. 17 선고 2022구합81261 판결)

7) 한겨레,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 공개하라-정보공개센터 행정소송 제기”

YTN, “법원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 공개하라’...시민단체 일부승소”, 2023.10.07.

MBC,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 공개해야.. 시민단체 일부승소”, 2023.10.07.

조선일보, “서울고법 ‘대통령비서실, 조직도·직원 명단 공개해야’...원심 유지”, 2024.9.26.

KBS, “서울고법, ‘대통령비서실, 조직도·직원 명단 공개해야’...항소 기각“, 2024.9.26.

8) 피고는 이미 대외적으로 비서관 이상의 직원들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고 있는데, 위 직원들 외에 다른 직원들도 그 직무의 내용이나 영향력에 비추어 비서관 이상의 직원들에 못지않은 자질과 능력, 책임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 따라서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누구인지는 어느 공무원보다 더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이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에 크게 기여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 반면에 이 사건 각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해당 직원의 입면 과정이나 경로가 드러나는 것은 아니므로, 그 공개로 인해 직원의 입면 등에 관한 인사권자의 재량행사가 제한되거나 침해될 수 있다는 주장은 지극히 막연하고 추상적인 우려에 해당하거나, 위와 같이 달성될 공익에 비추어 그리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2023. 8. 17 선고 2022구합81261 판결)

다만, 「정보공개법」은 동법에 따른 공공기관⁹⁾ 전체에 대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어떠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공개(또는 비공개)해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 일부 기관만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이며, 또한 ‘국가안보’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안보실에 대하여, 대통령비서실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할 것인지도 논의사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¹⁰⁾

문 의 처

02)6788-5339

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2. (생략)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2. 삭제 <2021. 6. 22.>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5.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6. 제5호 외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다만, 정보공개 대상 정보는 해당 연도에 보조를 받은 사업으로 한정한다.

10)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6호는 개인정보 및 국가안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공개/비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법률의 취지를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